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0 선고 2020가단239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윤인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25,096,7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96,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4541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원고에게 16,965,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시효 연장을 위해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91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24. 'C은 원고에게 25,096,70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은 201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E, C, F이 있으며, C의 상속지분은 1/4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 15.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03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9. 채권자 G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5. 23.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21,250,003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가 생겼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결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미달하는 채무자의 상속분이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도 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3,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 32,5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5,096,70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5,096,702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5,096,7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96,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14세대)

지층 236.27㎡, 1층 218.14㎡, 2층 내지 4층 각 219.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5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59.9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21분의 37.22, 끝.

